

##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 - 64호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 1. 제정이유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 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mailto:charity81@korea.kr)

### 4. 제정안: 붙임

##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

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 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

###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 □ 『평생교육법』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